

광주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5118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자산관리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2024. 5. 28.

판결 선고2024. 11. 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4. 2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53,557,27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557,2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및 인정근거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 이유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친의 사망 이후 형제들과의 우애를 상하지 않기 위해 피고 부부가 헌신적으로 모친의 사망시까지 재산을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 D의 상속재산은 모두 소진되어 소외 D의 이 사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또한 악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D의 상속재산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점 및 피고는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듯이 상속인간에 모친의 재산에 대한 정산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역시 일반 채권자에 불과함에도 채무자인 소외 D의 유일한 재산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의해 취득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윤중

별지